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1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 박완수·한기호·김태호

류성걸 • 이채익 • 정희용

송언석 • 이 용 • 추경호

주호영·한무경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대응 기관 등은 소방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 시간과 관련하여 이른바 '골든타임'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기동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현행법은 긴급자동차의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끼어들기 위반등에 한하여 특례로서 면책을 부여하고 있으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서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소방대원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고 공무 수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중상 해 등의 중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 지 신설, 안 제158조의2).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을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운행중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제158조의2 중 "제3조제1항에"를 "제3조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 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사망,

중상해 등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u>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u> 다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	에 따라 운행중인 경우에는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u><신 설></u>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
	<u>범</u>
<u> <신 설></u>	<u>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u>
	<u>침범</u>
<u> <신 설></u>	<u>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u>
	<u>지</u>
<u> <신 설></u>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
	보 등
<u> <신 설></u>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거
	리 확보 등
<u><신 설></u>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
	<u>차의 금지</u>
<u> </u>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u> <신 설></u>	<u>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u>
레1EO크 시O(취시 키면) 키크리트	조치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	제158조의2(형의 감면)
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 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 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제3조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자
동차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사고
의 원인이 되어 사망, 중상해
등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